-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02호

2020. 09. 17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9. 08. 유영주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. 09. 11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2020. 09. 17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유영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5조제1항제6호).

○ 유치원,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5조제3항).

○ 기타 인용 조문 정비(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, 제6조제2항, 제8조제1항,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.

○ **주요내용**

- 안 제5조제1항제6호에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제3항에는 유치원,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.
-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위법인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를 인용하여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을 금연 피해로 부터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○ **법령검토**

- 상위법령인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를 인용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조례에 추가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○ **문제점**

- 상위법의 조항을 적극 적용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보장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.

○ **종합의견**

- 상위법을 적용하여 영유아 및 아동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